영등포구의회 제13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2008. 5. 21.



行政委員會(專門委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.

윤준용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🔲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

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.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, 새마을지도자의 격려.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함.

█ 제정내용

-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수여 등으로 예우 할 수 있다(안 제2조)
- 새마을사업, 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등에 예산지원 할 수 있다(안 제3조)
- 구청, 각 주민센터, 기타 구청 산하공공기관에는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(안 제4조)

🔲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제정은 가능하다고는 판단됩니다.

그러나,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종로구에서 2006.11.3 제1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되였으나 구청 측에서 재의 요구로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.

● 본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특정단체 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 사회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 운영 취지에 벗어나 건전재정 운영차원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은 물론 바르게살기.자유총연맹 등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5. 21.

보고자:김 병 욱

<u>관 계 법 령</u>

🔲 지방자치법

-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제132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)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🔲 지방재정법
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- 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- 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 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mark></mark>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 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·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출연금의 교부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<개정 1999.12.31>
- 제4조(국·공유재산의 대부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·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